

1. 개정이유

- 엔지니어링사업자가 30일 이상 휴업하는 경우에만 휴업신고를 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이 일부개정(‘25.05.27.)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자구 정비
- 엔지니어링사업자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및 출입·조사 근거 및 엔지니어링사업자 지위 승계시 양수인등의 종전 엔지니어링사업자 행정처분 이력 등에 대한 확인 의무 및 관련 확인서 발급 내용이 신설되는 등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이 일부개정(‘25.12.02.)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조문 신설 및 자구 정비 등

2. 주요내용

- 개정 법률 조문(법 제21조제2항 각호 신설) 관련 문구 자구 수정(안 제8조~제10조), (안 별지 제10호 서식 및 제11호 서식)
- 엔지니어링사업자 지위승계 신고시 필요서류를 추가해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 개선(안 제12조), (안 별지 제12호 서식)
- 개정 법률 조문(법 제25조제3항 신설) 관련 지위승계시 행정처분 이력 확인 요청 및 확인서 발급 근거 조문·서식 마련(안 제12조의3 신설), (안 별지 제12호의2 서식 및 제12호의3 서식 신설)
- 개정 법률 조문(법 제21조의2 및 제25조제3항 신설) 관련 위탁업무처리 결과의 보고사항 추가 등(안 제19조제1항제3호의2 및 제4호의2 신설, 제6호 자구 수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1조제2항”을 “법 제21조제2항제1호”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법 제21조제2항”을 “법 제21조제2항제2호”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법 제21조제2항”을 “법 제21조제2항제3호”로 한다.

제12조에 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영 제33조 및 별표 3에 따른 기술인력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15조제2항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자 보유증명서를 말한다) 1부

6. 별지 제8호의2서식의 전문분야별 기술인력 배치표

7. 건물 등기사항 증명서 또는 임대차 계약서 등 사무소를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제1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3(행정처분 등 확인) ①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양수인등이 종전의 엔지니어링사업자가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지 및 행정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지 여부의 확인을 요청하려면 별지 제12호의2서식의 엔지니어링사업자 행정처분 이력 등 확인 요청서를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협회는 종전의 엔지니어링사업자가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지 및 행정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별지 제12호의3서식의 엔지니어링사업자 행정처분 이력 등 확인서를

요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19조제1항에 제3호의2 및 제4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제4호까지의 신고사항”을 “제5호까지의 신고사항 등”으로 한다.

3의2.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 및 출입·조사

4의2.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 행정처분 이력 등 확인 요청 접수 및 확인서 발급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2호의2서식 및 별지 제12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15일
------	-----	-----	------	-----

신고인	상호		신고번호
	대표자 성명	성별	생년월일
	본점 소재지		
	우편물 수령지		
	전화번호		FAX번호
	홈페이지		E-mail주소

총종업원수

구분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학력자(자격증 미소지자)	계
엔지니어링 인력	박사	명	명	명	명	명
	석사	명	명	명	명	명
	학사	명	명	명	명	명
	전문학사	명	명	명	명	명
	고졸	명	명	명	명	명
	소계					
관리인력 (관리직 등 지원인력)		명	명	명	명	명
기타 인력 (시공 등 엔지니어링 외 기술자)		명	명	명	명	명
계		명	명	명	명	명

변경신고 사항	변경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연월일	변경 사유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협회장 귀하

첨부서류	1.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법인이 상호·명칭, 영업소 소재지,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 사업자등록증(상호·명칭, 영업소 소재지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3.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 4. 영 제33조 및 별표 3에 따른 기술인력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15조제2항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자 보유증명서) 1부(기술인력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5. 별지 제8호의2서식의 전문분야별 기술인력 배치표(기술인력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6. 건물 등기사항 증명서 또는 임대차 계약서 등 사무소를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영업소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7. 그 밖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 비고: 변동사항이 많은 경우에는 별도 용지로 작성하여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수수료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협회가 정한 금액
------	--	---

작성방법

1. 신고인이란 법인의 경우 대표이사, 개인의 경우 대표자를 말하며 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서명은 사인의 형태로도 할 수 있으며, 날인은 인감도장이 아니라도 관계없습니다.
3. 다른 사람의 도장이나 서명을 위조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한 자는 형법 제231조부터 제240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 받게 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협회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확인사항인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건물 등기사항 증명서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엔지니어링사업 []휴업 []폐업 신고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적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상호	신고번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본점 소재지			
	우편물 수령지			
	전화번호	팩스번호		
	홈페이지	이메일		
휴업(폐업)	사유	일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 또는 제10조제1항에 따라 ([]휴업 []폐업) 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협회장 귀하

첨부서류	1. 휴업신고를 하려는 경우: 휴업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폐업신고를 하려는 경우: 폐업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협회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첨부서류 중 하나인 폐업사실증명원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휴업·폐업 신고서 제출 신고인	➡	접 수 한 국 엔 지 니 어 링 협 회	➡	처 리
------------------------	---	--------------------------	---	-----

엔지니어링사업자 지위승계 신고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15일
승계를 하는 사람	신고번호	업종	신고일	
	제 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상호(명칭)	전화번호		
	소재지	팩스번호		
승계를 받는 사람	상호(명칭)	대표자 성명	성별	
	소재지	생년월일		
	승계 사유	전화번호		
		팩스번호		
지위승계 분야	엔지니어링업	기술부문 등 개 부문	전문분야 등 개 분야	
	엔지니어링 컨설팅업	기술부문 등 개 부문	전문분야 등 개 분야	

총종업원 수

구분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학력자 (자격증 미소지자)	계
엔지니어링 인력	박사	명	명	명	명	명
	석사	명	명	명	명	명
	학사	명	명	명	명	명
	전문학사	명	명	명	명	명
	고졸	명	명	명	명	명
	소계	명	명	명	명	명
관리인력 (관리직 등 지원인력)		명	명	명	명	명
기타 인력 (시공 등 엔지니어링 외 기술자)		명	명	명	명	명
계		명	명	명	명	명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엔지니어링 사업자의 지위승계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협회장 귀하

첨부서류	1.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법인만 제출합니다) 2. 사업자등록증 3.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승계 전의 것을 말합니다) 4. 계약서 사본 등 지위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5.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33조 및 별표 3에 따른 기술인력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15조제2항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자 보유증명서를 말합니다) 1부 6. 별지 제8호의2서식의 전문분야별 기술인력 배치표 7. 사무실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건물등기부 등본 또는 임대차 계약서)	수수료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협회가 정한 금액
------	--	---

작성방법

1. 신고인이란 법인의 경우 대표이사, 개인의 경우 대표자를 말하며 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서명은 사인의 형태로도 할 수 있으며, 날인은 인감도장이 아니라도 관계없습니다.
3. 다른 사람의 도장이나 서명을 위조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한 자는 형법 제231조부터 제240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 받게 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협회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확인사항인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엔지니어링사업자 행정처분 이력 등 확인 요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양수인)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엔지니어링 사업자 행정처분 이력 등 확인 동의서	상호	신고번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소재지	전화번호	
	위 엔지니어링사업자에 대한 진행 중인 행정처분 절차 및 행정처분 이력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자		(서명 또는 인)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3제1항에 따라 위 엔지니어링사업자에 대한 진행 중인 행정처분 절차 및 행정처분 이력 확인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양수인)

(서명 또는 인)

협회장 귀하

처리절차

요청서 작성	→	내용 검토	→	보완 요청 또는 접수	→	확인서 발급
--------	---	-------	---	-------------	---	--------

신청인

한

국

엔

지

니

어

링

협

회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엔지니어링사업자 행정처분 이력 등 확인서				
상 호				
대 표 자		생년월일		
소 재 지				
엔지니어링업 신고번호		제 호	신고일자	
엔지니어링컨설팅업 신고번호		제 호	신고일자	
행정처분 사실 현황				
일련 번호	행정처분 날짜 (사전 통지 일자)	행정처분의 종류·내용 (행정처분 진행 절차)	행정처분의 근거 법령	행정처분의 사유 (위반사항)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3제2항에 따라 위 엔지니어링사업자에 대한 진행 중인 행정처분 절차 및 행정처분 이력을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 발급일자 기준 협회에 통보된 행정처분 내용으로 작성되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협회장 직인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엔지니어링사업자의 변경 신고) <u>법 제21조제2항</u> 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려는 엔지니어링사업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사항 변경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8조(엔지니어링사업자의 변경 신고) <u>법 제21조제2항제1호</u> --- ----- ----- ----- ----- ----- --.
1. ~ 7. (생략)	1. ~ 7. (현행과 같음)
제9조(엔지니어링사업의 휴업신고) ① <u>법 제21조제2항</u> 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의 휴업신고를 하려는 엔지니어링사업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엔지니어링사업 휴업신고서에 휴업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엔지니어링사업의 휴업신고) ① <u>법 제21조제2항제2호</u> -- ----- ----- ----- ----- -----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10조(엔지니어링사업의 폐업신고) ① <u>법 제21조제2항</u> 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을 폐업하려는 엔지니어링사업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엔지니어링사업 폐업신고서에 폐업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에 제출하	제10조(엔지니어링사업의 폐업신고) ① <u>법 제21조제2항제3호</u> -- ----- ----- ----- ----- ----- -----

현행	개정안
여야 한다. ② (생략) 제12조(엔지니어링사업자의 지위 승계 신고)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지위승계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엔지니어링사업자 지위승계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 4. (생략) <u><신설></u> <u><신설></u> <u><신설></u> <u><신설></u>	-----. ② (현행과 같음) 제12조(엔지니어링사업자의 지위 승계 신고) ----- ----- ----- ----- ----- -----. 1. ~ 4. (현행과 같음) 5. <u>영 제33조 및 별표 3에 따른 기술인력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15조제2항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자 보유증명서를 말한다) 1부</u> 6. <u>별지 제8호의2서식의 전문분야별 기술인력 배치표</u> 7. <u>건물 등기사항 증명서 또는 임대차 계약서 등 사무소를 보유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u> <u>제12조의3(행정처분 등 확인) ①</u> <u>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양수인 등이 종전의 엔지니어링사업자가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지 및 행정처분을 받은 이력</u>

현행	개정안
제19조(위탁업무처리결과의 보고) ① 협회는 영 제56조제2항에 따라 매달 위탁업무의 처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다음 달 10일까지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 3. (생략) <u><신설></u> 4. (생략) <u><신설></u>	<u>이 있는지 여부의 확인을 요청하려면 별지 제12호의2서식의 엔지니어링사업자 행정처분 이력 등 확인 요청서를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u> <u>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협회는 종전의 엔지니어링사업자가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지 및 행정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별지 제12호의3서식의 엔지니어링사업자 행정처분 이력 등 확인서를 요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u> 제19조(위탁업무처리결과의 보고) ① ----- ----- ----- ----- -----. 1. ~ 3. (현행과 같음) <u>3의2.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 및 출입·조사</u> 4. (현행과 같음) <u>4의2.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u>

현행	개정안
5. (생략) 6. 영 제34조제2호부터 <u>제4호까지</u>의 <u>신고사항</u>의 유지·관리 현황 ② (생략)	<u>엔지니어링사업자 행정처분 이력 등 확인 요청 접수 및 확 인서 발급</u> 5. (현행과 같음) 6. ----- <u>제5호까지</u> <u>의 신고사항 등</u>----- -- ② (현행과 같음)